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중국의 외투기업 유치정책 7대 변화와 시사점

발행인 : 하 태 형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02-2072-622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중국의 외투기업 유치정책 7대 변화와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 개방정책의 변화	1
2. 중국 외투기업 유치정책 7대 변화	3
3. 종합평가	10
4. 시사점	12
【HPI 경제 통계】	13

< 요약 >

□ 중국의 외투기업 유치정책 7대 변화와 시사점

■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 개방정책의 변화

중국은 1978년부터 자력갱생형 폐쇄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대외개방·경제개혁을 통한 성장전략을 추진,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기조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는 과거와 달리 선별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펼쳐 경제의 체질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12.5규획 기간(2011~2015년)에 제시된 외투기업 유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요건, 투자대상 산업범위, 반독점 규제, 고용 및 사회보장책임, 조세, 환경책임, 청산제도 등 7개 세부 분야의 정책 현황과 변화 방향을 분석하였다.

■ 중국 외투기업 유치정책 7대 변화

중국 현행 외투기업 유치정책을 7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관련 규정이 완화된 측면이 있는 반면 강화된 측면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관련 정책이 완화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투기업 설립 요건이 완화되고 있다.** 외투기업 설립요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정부의 간섭통제를 최소화하여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둘째, 외투기업의 투자대상 산업은 고도화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정부 출범을 앞둔 2012년부터 하이테크 제조업, 지적재산권사업 등 산업의 질적 구조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분야로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셋째, 외투기업 청산 관련 규제도 완화되었다.** 신파산법에서 기업파산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중국 진출 외국계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외투기업 유치정책이 강화된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투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강화되었다.** 외투기업의 중국 내 영향력 확대 등에 대한 경계심이 확대되면서 외투기업의 담합, 시장지배지위 남용, 기업합병 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둘째, 외투기업의 고용 및 사회보장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소득분배 개선 노력이 가속화 되면서 노동자 최저임금 지속 상향 조정은 물론 노동자에 대한 경제보상금이나 사회보장금 및 사내 노조 지원 등에 대한 의무도 강화되었다. **셋째, 조세의무도 강화되었다.** 제조업 부문 외투기업을 중심으로 기존 세금우대 사항을 모두 폐지하는 등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축소하였다. **넷째, 외투기업의 환경 책임도 강화하고 있다.** 기업들의 유해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사후 관리를 엄격히 하는 한편 환경부담금, 벌금 등의 규제도 강화하였다.

<p style="text-align: center;">< 외투기업 유치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 ></p>		
분 야	주 요 내 용	평 가
설립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투기업 설립 조건 완화 • 행정절차 간소화 등 	완화
투자대상 산업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가능 산업 및 장려 산업 범위 점차 확대 • 고위기술(하이테크), 서비스 등 분야 개방 등 	완화
반독점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투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기준 엄격히 적용 • 외투기업 반독점, M&A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강화
고용 및 사회보장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기준 상향 • 경제보상금, 사회보장금 등 책임 강화 	강화
조세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투기업 소득세(법인세) 인상, 대부분 혜택 폐지 • 하이테크 등 관련 외투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은 유지 	강화
환경보호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물질 배출 및 사후관리 기준 엄격히 적용 • 위법행위 발생시 법적 책임 강화 	강화
외투기업 청산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투기업 파산절차 등 규정 명시 • 기업갱생 유도 정책 실행 	완화

■ 종합평가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은 외투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은 용이하게 해준 반면 전반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강화하고 있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다. 향후에는 특정 지역, 산업에서 단계적으로 중국식 외투기업 유치정책을 확대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특화 정책으로 자유무역특구, 연해지역 경제개방특구에서 외투기업 유치 정책의 검증은 진행함과 동시에 내륙지역에 대한 외국자본유도 정책도 확대할 전망이다. 그리고 산업특화 정책으로 산업 고도화 추진을 목표로 외투기업에 대해 신성장동력, 고부가가치 산업 개방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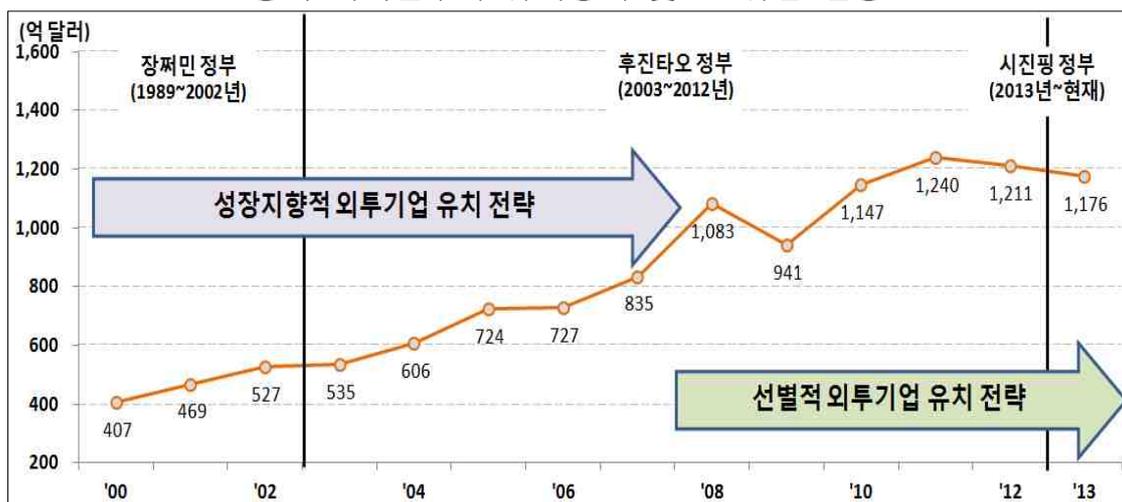
중국의 외투기업 유치 전략이 변화함에 따라 對中 투자전략의 틀을 정비하고 우리기업의 경쟁력 향상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첫째,** 중국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국 지역(省)별, 업종·품목별 맞춤형 법률 및 시장정보제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R&D, 기획 등 부분에서 중국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공조를 통해 발 빠른 중국 내수시장 침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수출 주력형 우리 기업들이 중국 고부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 조세 측면에서의 지원과 더불어 국내 R&D 인프라, 금융시스템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외투기업 투자가능 산업 범위의 확대 정책에 대응해 對中 투자 고도화 대책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책임 강조에 따른 비용압박 가중에 대비해 생산효율성 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가 절감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1.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 개방정책의 변화

○ 중국은 개혁개방(1978년) 이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추진하면서 외투기업 유치정책 개혁이 가속화 되고 있음

- 1978년 개혁개방 이후부터 외국인 투자자를 본격적으로 유치
 - 1978년부터 중앙계획경제, 사회주의 상품경제 등 자력갱생형 폐쇄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대외개방·경제개혁의 방향으로 선회
 -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덩샤오핑의 주도하에 연해지역에 경제특구를 대거 설치하여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본격 시작
- 90년대 초반부터는 경제개방 수준 확대 노선을 추구
 - 1992년부터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¹⁾ 노선을 추구
 -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그동안의 성장 중심의 외투기업 유치유치 전략으로 인한 부작용을 인정하고 대외개방전략의 변화 시도
 -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들을 수정하면서 새로운 대외개방 모형 모색
 - 후진타오 정부 2기(2008년), 금융위기(2008년) 이후부터는 과거와 달리 외투기업에 대해 선별적인 개방 정책을 펼쳐 경제의 체질개선을 도모

< 중국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및 FDI유입 현황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1)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경제발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되, 기업경영에 대해서는 과도한 행정개입을 억제하고 시장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말함.

○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12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의 변화 기조에 따라 7개 세부분야에서 외투기업 유치정책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중국은 외국인투자의 발전에 따라 12.5계획 기간(2011~2015년) 일련의 법률, 법규를 제정 및 개선하여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체계 구축을 추진
 - 중국은 12.5계획 기간 동안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기업유치와 퇴출 제도를 정비
 -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주어졌던 세제우대 등의 특혜를 축소함과 동시에 평등한 외국인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노동 및 환경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외투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지배력 확장을 규제하는 등 정책적 변화도 시도하고 있음
- 12.5계획에서 제시한 외투기업 유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7개 세부 분야에서 중국 외투기업 유치정책 현황에 대해 분석
 - 외투기업 설립, 경영, 청산 등 3가지 측면에서의 외투기업 유치 정책을 분석
 - 세부적으로는 중국의 외투기업 설립 장벽, 투자가능산업 범위, 반독점 규제, 고용·사회보장책임, 조세 및 환경책임, 외투기업 청산제도 등 7개 분야임

< 본 보고서 연구범위 >

구 분	12.5계획기간 외투기업 유치 방향	본 보고서 연구범위
외투기업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투기업 투자 친화적 환경 구축 · 신규 진출허가표준에 따라 외투기업 심사, 비준 등 	1. 기업 설립 요건
외투기업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업, 新성장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 · 시장질서, 노무, 환경에 관한 기준을 새로 적용 · 외투기업에 대한 세율인상 실행안 제시 등 	2. 투자대상 산업 범위 3. 반독점 규제 4. 고용 및 사회보장 규정 5. 조세의무 6. 환경관련 규정
외투기업 청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투기업의 합리적인 파산을 인정 · 파산 및 기업청산 과정 투명화 실시 등 	7. 기업 청산 제도

2. 외투기업 유치정책 7대 변화

① 기업 설립 요건 완화

○ 중국은 회사설립의 장벽을 낮춤으로써 기업설립 및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부의 간섭통제를 최소화하고 있음

- 지난 2013년 12월 중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수정을 통한 회사설립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사업 환경 개선 시도
 - 최근 중국은 정부기관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전환하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외투기업 설립 관련 제도를 대폭 완화
 - 특히, 오래 동안 실행되어 오던 자본금납입제도, 최저 등록자본금제도 등 분야에서 큰 개혁 실시
 - 더불어, 회사등록자본금 등기관리 규정, 중외합자(공동출자)경영기업법 등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고 중외합자(공동출자)경영기업법 출자규정, 지분출자관리방안 등 법규는 폐지

< 新회사법 주요 개정 내용 >

분야	기존 실행 내용	개정 내용 (2013.12 개정)
등록자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투자자 자본금 분할 출자시 1차 자본금 출자금 비율은 20% 이상, 회사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1차 자본금 납입, 나머지는 2년 이내 납입 · 최저 등록자본금은 유한책임회사 3만위안 이상, 단독주주유한책임회사 10만 위안 이상, 주식회사 500만 위안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자본금, 현금 및 비현금 출자 비율 관련 규정 폐지
현금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자본금의 30% 이상 	
비현금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투자자 출자방식 중 지적재산권, 기술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출자비율은 전체 출자금의 20%미만으로 제한 	
출자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 후 회계법인의 출자검사보고서를 관련기관에 제출 	

자료 : 關於廢止和修改部分行政法規的決定.

② 투자 대상 산업 고부가가치화

○ 중국은 점차 자국 산업에 이득을 줄 수 있는 고부가가치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 정책 변화를 강조

- 1995년에 처음 제정된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은 장려·제한·허가·금지 업종으로 구분, 2012년까지 총 5차례 개정됨
 - 2013년 3월 중국 상무부는 2012년에 개정된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 가이드라인을 재차 강조, 산업구조개편에 맞는 외투기업 유치 전략의 변화 시사
- 2002년부터 외국인의 자국 산업에 대한 투자범위 확대 시도, 최근에는 자국 산업 업그레이드에 적극 활용
 - 지난 2002년(2차 개정안)에는 그동안 외국인투자를 금지해 오던 주택개발, 일부 유통·통신 서비스 등 262개 부분을 장려업종으로 정하고, 제한업종과 금지업종을 각각 75개, 34개로 지정
 - 2004년(3차 개정안)에는 장려업종이 256개로 줄어든 대신 제한업종은 78개, 금지업종은 35개로 증가, 전반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음
 - 지난 2012년 개정안에서는 하이테크 제조업, 지적재산권사업 등 산업의 질적 재편을 염두에 둔 외투기업 유치 분야를 강조

< 외국인투자 지도목록 개정 추이 >

분야	1995년(제정)	2002년(2차 개정)	2012년(5차 개정)
장려업종	· 황무지 개발, 교통·인프라, 전자일렉트로닉스 등 172개	· 발전설비제조업, 제어계측기계 및 사무용 기계제조, 일반상품 도소매, 정보컨설팅 등 262개	· 물류시스템 건설운영, 지적재산권, 하이테크 산업 등 354개
제한업종	· 가전제품, 자동차, 은행 등 107개	· 정유공장 경영, 수신기제조, 교통운수, 토지개발, 금융리스, 법률자문 등 75개	· 부동산개발, 철도·여객운송, 통신 등 80개 분야
금지업종	· 우편, 전신, 마스크, 무기생산 등 31개	· 회토류채굴, 송전망 건설, 신문사, 선물(금융) 등 34개	· 무기생산, 교통·운수 등 39개
허가업종	· 위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업종	· 2002년 2차 개정안부터 허가항목을 따로 정하지 않음	

자료 : 國家發展和改革委員, 商務部.

③ 반독점 규제 강화

○ 외투기업의 중국내 영향력 확대 및 중국 기업에 대한 독과점 및 M&A 시도에 대한 경계심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통제 강화

- 중국은 지난 2007년 반독점법을 새로 통과, 기업의 독점협약(카르텔), 시장 지배 지위, 인수합병 등과 같은 독점규제법을 공포함
 - 중국은 시장규율에 맞춘 경제개혁 및 서민경제 안정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개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가격담합 등 독점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대폭 강화
 - 반독점법은 2008년부터 시행, 2010년, 2013년에 기업 인수합병(기업결합)에 관한 세부내용을 한층 구체화
- 중국의 반독점법의 주된 규율 대상은 중국 자국기업이 아닌 외투기업이 될 가능성이 큼
 - 중국 반독점법은 다국적 기업을 감독 및 제재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으로, 다양한 불법경쟁을 집중적으로 단속
 - 특히, 다국적 기업의 중국 시장에서의 카르텔 행위,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외투기업의 중국기업에 대한 기업결합 및 외투기업 간 기업결합 등에 대한 폭넓은 규제 실시하고 있음

< 반독점법 주요 내용(2008년 시행) >

구 분	주 요 내 용	불이행시 처벌
담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르텔을 통한 독점행위 금지 · 생산자/판매자가 유통자에게 미리 가격을 정해주는 행위 금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중지 명령 · 전년도 매출의 1~10%의 과징금
시장지배 지위 남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하게 높은 혹은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금지 ·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금지 · 끼워 팔기 또는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이행시 최대 50만 위안 과징금
기업합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신고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 주식/자산의 취득, 계약 등을 통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 - 합병 참여기업들의 세계 매출 총합이 100억 위안 이상인 동시에 중국 내 매출이 기업들 각각 4억 위안 이상이 경우 · 외투기업은 특별히 국가안보심사 통과 필요 	—

자료 : 中華人民共和國反壟斷法(2007).

④ 고용 및 사회보장 책임 강화

○ 인력고용 측면에서는 최저 임금기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비용 부담관련 규정이 복잡해지는 등 고용환경은 점차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중국 정부의 소득분배 개선 노력이 가속화 되면서 노동자 최저임금수준을 꾸준히 상향 조정, 기업들의 노동원가 압력 가중
 - 2013년 중국의 22개 성(省)에서 최저임금을 인상, 평균 인상률은 18.4% 기록
 - 소득분배 개혁은 시진핑 정부 민생분야 최대 화두이며, 2015년까지 연평균 13%의 임금 인상을 지속 단행할 계획
- 노동자에 대한 경제보상금, 사회보장금 및 사내 노조 지원 등 의무도 가중
 - 퇴직 직원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후 상조금 등 비용 지급이 의무화로 규정 되어 있어 기업들이 퇴직충당금 마련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
 - 또한, 5대 사회보험의 실시를 확대하고, 의료보험의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조치 실시

< 노무관련 비용부담 현황 >

분야	주요 내용	
최저임금	· 2013년 22개 성(省)에서 최저임금을 인상, 평균 인상폭 18.4% · 2015년까지 연평균 13%의 임금 인상 단행 계획	
경제보상금	· 퇴직직원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후 사망보조금 등 의무 지급 - 2014년부터 기존 퇴직금 수준의 10% 추가 지급 의무화 - 퇴직충당금 마련에 따른 기업재무 부담 가중	
노동조합	· 노조 구성 의무화 (社측은 노조경비로 총임금비용의 2%를 의무적 지원)	
5대 보험	· 쉰직원 5대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 기업의 사회보험금 부담률이 40%에 육박(한국은 2012년 기준 10.2%)	
	연금보험	20%(기업부담), 8%(개인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구좌와 사회총괄기금에 각각 납부
	의료보험	8%(기업), 2%(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부담금의 70%, 30%를 각각 의료통합기금과 개인의료전용구좌에 납부 · 개인납부금 전액을 개인의료전용구좌에 납부
	실업보험	2%(기업), 1%(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총괄기금에 납부
	산재보험	최대 1.5%(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총괄기금에 납부
	보육보험	0.8%(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총괄기금에 납부

자료 : 中國國務院이 발표한 관련 법규.

- 주 1. 산재보험은 산업별로 상이하며 부담률은 일반적으로 0.5~1.5%임.
- 2. 5대 보험의 기업, 개인 부담률은 월급여 대비 비율을 의미함.

⑤ 조세 의무 강화

○ 2008년부터 외투기업의 기업소득세 법정세율은 하향 조정되었지만, 기존에 실시하던 대부분의 세제혜택은 사라짐

- 2008년부터 지방세를 폐지하고 기업소득세(법인세)를 25%로 일괄 인하하였으나, 기타 세금 유대사항은 모두 폐지하는 등 외투기업에 대한 혜택 축소
 - 소폭 인하된 25% 법정세율에 관해서는 2008년 이전에 설립된 기업은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2014년부터 전면 적용
 - 특히, 제조업 부문 외투기업에 대한 저세율, 세금감면 혜택을 일괄 폐지하고 중국 현지기업들과 똑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등 기존의 우대정책 축소
- 단, 중·서부 지역의 외투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면제 혹은 50% 감면 정책과 하이테크 외투기업에 대한 15% 법인세 부과 원칙은 그대로 유지

< 외투기업소득세(법인세) 혜택 변경 내용 >

분야		변경 전 (2007년 까지)	변경 후 (2008년 부터)
법정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3% 적용 : 일반 비생산성 기업 • 24+3% 적용 : 연해 경제개방구 기업 • 15+3% 적용 : 하이테크 기업 (3%는 지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 일괄 적용 (단, 하이테크 15%, 중소기업 20%) • 지방세 폐지
우대세율	저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적용 : 경제특구 외투기업 및 국가급 개발구 제조업 부문 외투기업 • 24% 적용 : 주요도시 제조업 부문 외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사항 폐지 • 2007년 이전 설립기업은 2013년까지 단계적 폐지
	감면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감면 : 경영기간 10년 이상인 제조업 부문 외투기업, 이익발생년도 2년 차까지 • 절반 감면 : 경영기간 10년 이상인 제조업 부문 외투기업, 이익발생년도 3~5년차 • 수출비중이 70%이상인 제조업 부문 외투기업은 감면세율 혜택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사항 폐지 • 2007년 이전 설립기업은 2013년까지 단계적 폐지 • 공공인프라,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관련 사업에 대해서 이익연도 3년차까지 법인세 100% 감면, 4~6차에는 절반 감면 • 수출형 생산 외투기업의 관련 우대사항 폐지

자료 : 중국 新기업소득세법(2007).

⑥ 환경 책임 강화

○ 중국의 환경 관련 법규는 오염물질 방출 및 관리 등에 관한 외투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

- 기업들의 유해 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사후 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한 규정들을 시행
 - 전자·정보·전기 등 IT관련 분야에서 오염물질 회수정보를 의무화
 - 2013년 3월 중국 환경보호부는 화력발전과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에 대해 전국 47개 도시에서 新배출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
 - 2020년까지 PM2.5 등의 배출을 대폭 감축하기 위해 2015년까지 오염방지시스템을 확립할 방침
- 그 외에도 2015년부터 시행예정인 新환경보호법은 환경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기업들의 관련 책임을 명시한 내용을 포함
 - 26년 만에 개정된 환경보호법에 따라, 과거에는 환경오염 기업에 대해 벌금형 등 처벌만이 가능하였으나, 향후에는 기업 폐쇄명령을 내리거나 시설·설비 몰수도 가능해짐
 - 또한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도 환경 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등 내용을 추가

< 주요 환경보호 관련 규정 >

법규	발효시기	주요 내용	대상
전자정보제품 오염관리법	2007	· 전자정부 제품에 포함된 주요 오염물질 허용 함량에 대한 감독 강화	전자정보 등
폐기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관리 조례	2009	· 제품판매, 수리업체의 제품회수정보 명시 의무화	전기전자 등
폐가전/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규칙	2011	· 전자제품의 에코디자인, 제품정보에 대한 회수·처리 의무 부과	전자 등
대기오염방지 목표책임서	2014	· 지방정부의 PM2.5 관리감독 의무 명시 · 석유, 화학 등 산업에 대한 감독 강화	화학, 석유 등
新환경보호법	2015	· 환경오염 기업에 대한 퇴출명령 실시 및 설비·장비 몰수 제도 도입 · 환경부담금 납부	제조업 전 산업

자료 : 관련 법규 정리.

⑦ 기업 청산 규정 완화

○ 중국은 기업 파산·청산 제도를 규범화하여 외투기업들의 파산정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시도

- 신파산법에서 기업 파산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중국 진출 외국계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됨
 - 중국은 지난 2008년부터 新파산법을 실행하여 적용범위를 기존의 국유기업에서 외투기업에 까지 확대, 기존의 불분명한 외국계 기업 파산 절차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
 - 또한 회사정리(청산제도)제도를 새로 추가하여 파산을 예방하고 기업갱생을 유도하는 유화 정책도 실시
 - 더불어 중국 경외(境外) 채무자 자산에 대한 외국법원의 판결도 승인
- 한편, 파산기업의 경영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명시하는 등 책임 항목에 대한 기준은 강화

< 新파산법 주요 내용(2008년 실행) >

구 분	변경 전 (2007년 까지)	변경 후 (2008년 부터)
적용범위	· 국유기업	· 외투기업, 국유기업, 민간기업 · 개인사업자 및 개인은 제외
자산정리제도	· 화해(재건제도)	· 화해(재건제도), 회사정리(청산제도)
자산 관리인	· 관련 규정 없음	· 파산채권을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 추가
파산기업 경영자 책임	· 불명확	· 파산책임이 있는 경영자, 임원, 감사, 채무자 등의 법률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
역외효력	·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경외(境外)의 도산 절차 효력에 대해 불인정	· 외국법원의 파산판결 인정

자료 : 중국 新기업소득세법(2007).

3. 종합평가

- 중국은 외투기업 진입과 퇴출에 관련 정책은 완화하고 있으나 기업경영 과정의 사회적 책임은 강화하고 있음
 - 외국법인 설립조건 완화,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 긍정적 변화를 꾀하고 있음
 - 동시에 외투기업청산 관련 제도도 완화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외투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자산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함
 - 반면, 기업경영 과정에서의 독점 등 중국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는 엄격히 실시
 - 또한 최저임금 수준, 사회보장, 세금 등 측면에서는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를 실행하고 있어 외투기업들의 비용압박이 가중되는 부정적 영향도 있음

< 중국 외투기업 유치정책 변화 방향 >

분야		주요 내용	평가
외투기업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투기업 설립 조건 완화 •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 	완화
외투기업 경영	투자대상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가능 산업 및 장려 산업 범위 점차 확대 • 고위기술(하이테크), 서비스 등 분야 개방 등 	완화
	반독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투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기준 엄격히 적용 • 외투기업 반독점, M&A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강화
	고용 및 사회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기준 지속 향상 • 노동자에 대한 경제보상금, 사회보장금 등 책임 강화 	강화
	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투기업 소득세(법인세) 인상, 대부분 혜택 폐지 • 하이테크 등 관련 외투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은 유지 	강화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물질 배출 및 사후관리 기준 엄격히 적용 • 위법행위 발생시 법적 책임 강화 	강화
외투기업 청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투기업 파산절차 등 관련 규정 명시 • 기업갱생 유도 정책 실행 	완화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향후 특정 지역, 산업에서 단계적으로 중국식 외투기업 유치정책을 발전 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

- (지역특화 정책) 자유무역특구, 연해지역 경제개방특구에서 외투기업 유치 정책의 검증은 진행, 내륙지역에 대한 외국자본유도 정책도 확대할 전망
 - 중국은 현재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등에서 유례없는 개방정책을 시범운영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큼
 - 더불어, 지역 간 균형발전 일환으로 충칭(重慶), 쓰촨(四川), 산시(陝西) 등 내륙 거점지역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보임
 - 한편으로는 외투기업들이 밀집한 동부지역에서의 환경, 노무 등 책임을 강화하는 움직임 확대

- (산업특화 정책) 산업 고도화 추진 일환으로 외투기업에 대해 신성장동력, 고부가가치 산업 개방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노동밀집형 외투기업 등에 대한 청산정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외투기업 투자산업을 고도화 하는 노력 강구
 - 또한 ‘세계의 공장’에서 ‘연구센터의 중심’이 되기 위해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
 -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외투기업의 기술·자본 우위를 이용한 시장지배 및 독점을 견제하고 자국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확대

< 중국 외투기업 유치정책 발전 방향 >

정책 방향	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background-color: #ffe0b2;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특정지역 맞춤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선도지역 개방 확대 ➢ 내륙도시에 대한 투자 유도 ➢ 동부지역 외투기업 책임 강화 등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p style="background-color: #bbdefb;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특정산업 맞춤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기술 교환 전략 폐지 ➢ 신산업에 대한 개방 확대 ➢ 노동밀집형, 경공업 축소 등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이자유무역구, 충칭, 쓰촨 등 내륙지역에서의 기업설립 조건 완화 · 동부지역에서의 환경 등 책임 강화 등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ccc;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밀집형 외투기업 청산정리 간소화 · 기술주도형 제조업,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가능 범위 확대 · 자국 성장산업(자동차, 기계 등) 분야에서 외투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 등 </div>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4. 시사점

- 중국의 외투기업 유치 전략이 변화함에 따라 對中 투자전략의 틀을 정비하고 우리기업의 경쟁력 향상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 첫째, 중국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시장정보제공 체계 구축 필요
 - 현지 진출기업과 국내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중국 지역(省)별, 업종·품목별 법률 및 시장정보를 조사·분석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둘째, 중국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공조를 통해 발 빠른 중국 내수시장 침투 전략을 마련
 - 기존의 생산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R&D, 기획 등 부분에서 현지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 선점 전략 모색 필요
 - 셋째, 수출 주력형 우리 기업들이 중국 고부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의 지원체계 마련 필요
 - 특히, 연구개발투자에 관련된 금융, 조세 측면에서의 지원을 확대하여 신기술의 제품화와 수출형 신상품 개발을 적극 부추겨야 함
 - 또한, 현지 진출 기업들이 국내 높은 수준의 R&D 인프라, 금융시스템과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 넷째, 외투기업 투자가능 산업 범위의 확대 정책에 대응해 對中 투자 고도화 대책 필요
 - 수익률이 적은 경공업제품 가공무역, 조립형산업에 대한 투자에서 하이테크 산업, 서비스 등 분야로의 투자를 적극 모색 필요
 - 또한, 한중 FTA 등 경제협력 채널을 확대하여 관세, 비관세 등 對中 투자장벽 완화 기회 포착
 - 다섯째, 임금인상 등에 따라 외투기업들의 원가인상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므로 기업들의 장기적인 실전 대책 마련이 필요
 - 임금인상, 사회보장 책임 강화 등은 필연적인 추세인 만큼 현지 우리 기업들은 생산효율성 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가 절감 노력 지속 **HRI**

미래연구본부 천용찬 연구원 (2072-6274, junius73@hri.co.kr)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분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2.3	2.1	2.7	3.4	3.7	3.0	3.9	-	3.6	
	민간소비(%)	1.9	1.7	2.1	2.1	2.2	2.0	2.6	-	2.5	
	건설투자(%)	-3.9	1.9	9.8	8.8	5.4	6.7	4.1	-	2.6	
	설비투자(%)	0.1	-12.7	-3.9	1.5	10.9	-1.5	8.0	-	5.4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	508	105	208	238	248	799	151	-	790	
	통관기준	무역수지(억 \$)	283	56	144	108	133	441	52	151	455
		수출(억 \$) 증감률(%)	5,479 (-1.3)	1,353 (0.3)	1,412 (0.7)	1,368 (2.8)	1,464 (4.7)	5,596 (2.1)	1,376 (1.7)	1,460 (3.4)	5,836 (4.3)
	수입(억 \$) 증감률(%)	5,196 (-0.9)	1,297 (-2.9)	1,268 (-2.8)	1,260 (0.3)	1,331 (2.5)	5,156 (-0.8)	1,324 (2.0)	1,309 (3.3)	5,381 (4.4)	
		소비자물가 상승률(%)	2.2	1.6	1.2	1.4	1.1	1.3	1.1	1.6	1.7
	실업률(%)	3.2	3.6	3.1	3.0	2.8	3.1	4.0	3.7	3.6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27	1,085	1,123	1,111	1,062	1,095	1,069	1,029	1,03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